

의안번호	2207995
의 퇴 인	김태호 의원
회 답 일	2025. 2. 18.
추계번호	25F073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군부대 급식용역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군부대 급식업체가 제공하는 음식 위탁용역에 대해 공급가액의 30%를 세액공제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 세수는 2027년 443억 원, 2031년 479억 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,305억 원(연평균 461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 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군부대 급식용역에 대한 세액공제 (안 제104조의35 신설)	443	452	461	470	479	2,305	46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4조의35 신설(군부대 급식용역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군부대 급식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용역 공급가액의 30%를 2030.12.31.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4조의35 신설 (군부대 급식용역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5년 중 통과되어 2026년 시행될 것을 전제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가 군부대에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세액공제의 세수효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
 - 현재 군부대에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와 위탁급식 공급에 따른 총 계약인원은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
 - － 2025.1월 현재 위탁급식 공급업체 7개, 총 계약인원 30,481명(육군: 15,011명, 해군: 3,700명, 공군: 9,250명, 해병대: 2,520명)
 - 1일 급식비 추정단가는 「2025년 국방부 예산안」 급식비 단가(장병 1인 1일 13,000원)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에 따라 증가하며 365일간 급식을 제공할 것으로 가정
 - 군부대 위탁급식업체 향후 공급가액 추정치의 30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가정

3.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가 군부대에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30%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자 함
- 2025년 위탁급식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인원 30,481명이 향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 -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2025년 1월 기준 위탁급식 공급업체는 7개, 위탁급식 공급계약에 따른 인원은 30,481명(장교 및 부사관을 제외)

[표 2] 군부대 급식업무 위탁 현황: 2025.1월

(단위: 개, 명)

위탁급식 공급업체	군부대 급식 부대		계약인원
	구분	부대 수	
A업체	육군	2	2,000
B업체	육군	7	6,996
	해군	1	800
	공군	2	3,100
	해병대	1	1,420
	소계	11	12,316
C업체	육군	3	3,265
	공군	1	1,850
	소계	4	5,115
D업체	공군	1	2,500
	해군	2	2,900
	소계	3	5,400
E업체	육군	1	650
	공군	1	1,800
	해병대	1	1,100
	소계	3	3,550
F업체	육군	1	700
G업체	육군	2	1,400
합계		26	30,481

자료: 국방부 제출자료

□ 1인당 1일 급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에 따라 증가하며, 연간 365일 급식을 제공할 것으로 가정

- 「2025년 국방부 예산안」 급식비 단가(장병 1인 1일 13,000원)를 기준으로 2025년 1인당 연간 급식비는 4,745,000원
- 1인당 연간 급식비에 계약인원을 곱한 2025년 공급가액은 1,446억 원으로 추정됨
- 연간공급가액은 국회예산정책처 「2025년 NABO 경제전망: 2024~2028」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연도별 공급가액 산출
- 연도별 공급가액에 30%를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산출

[표 3] 공급시기에 따른 공급가액 및 세액공제액 추정치: 2026~2030년

(단위: 억 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공급가액 (계약인원×연간 급식비 추정액)	1,475	1,505	1,535	1,566	1,597	7,678
세액공제액 (공급가액의 30%)	443	452	461	470	479	2,305

자료: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처 작성

- 개정안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군부대 급식업체가 제공하는 음식 위탁용역에 대해 공급가액의 30%를 세액공제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 세수는 2027년 443억 원, 2031년 479억 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,305억 원(연평균 461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 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군부대 급식용역에 대한 세액공제 (안 제104조의35 신설)	443	452	461	470	479	2,305	461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수인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수인	02-6788-4839	suin2025@assembly.go.kr